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구단126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9. 9. 18.
판 결 선 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8. 1. 3. 원고들에게 한 취득세등 78,942,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2

가. 피고는 2018. 1. 3. 원고들에게 "원고 B은 주식회사 C(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제조업,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400주, 원고 A가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 B이 2016. 2. 17. D으로부터 주식 2,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던바, 부부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인들인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간주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78,942,0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30.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 설립시 자본금을 납입하였고, 위 D은 원고들의 피용자로서 명의를 빌려 D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에 D은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관여한 적이 없었던바,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새로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2

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2

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2015. 9. 10. 소외 회사 설립시 자본금을 납부하였던 점,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A였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예금, 자산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③ D은 원고들의 직원으로서 일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고, 소외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월 120만 원의 고정급여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있고, 그의 남편인 원고 B이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부부 사이에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D은 소외 회사 운영에서 소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D이 위험을 무릅쓰고 최대 투자자로서 투자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⑤ 더구나 최대지분권자인 D이 집행기관도 아닌 감사의 지위만을 갖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D의 위 진술은 신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그들의 피용자인 D 명의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주식 인수는 명의신탁 해두었던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주주명의를 회복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2

판사 [redacted]